

## 4.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(제정) 2011-01-2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 및 권한)** ①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는 해당년도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) 책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한다. ②위원회는 등록금산정에 필요한 자료(대학예·결산서 등 회계관련 자료, 각종 사업계획관련 자료 등)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사무처장, 학생처장, 총원우회 회장·부회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되, 학부형 가운데 사회·경제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년도 등록금책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,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간사와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 ② 간사는 대학 총무담당이 되며, 서기는 등록금책정 담당자가 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